

□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차이점

구분	법인기업	개인기업															
설립절차	* 사업계획→사업장확보 설립등기→사업자등록 * 온라인 재택창업시 기본자료 일괄 입력으로 종결	* 사업계획→사업장확보→사업자등록															
자본조달	* 다수 출자자를 통해 대규모 자본 확보 가능	* 개인 출자에 의존함으로 자본조달에 한계															
경 영	* 회사의 형태에 따라 유한책임 또는 무한책임 * 소요와 경영의 분리 * 전문 경영인 등에 의한 경영 한계 극복	* 경영활동에 대한 단독 무한 책임 * 신속한 의사결정 * 개인 역량 의존에 따른 경영의 한계															
이윤분배	* 출자자의 지분에 따라 분배	* 이윤의 전부가 개인에 귀속															
기업영속성	* 지분양도의 형태로 기업의 영속성 유지 * 지분양도시 낮은 세율의 양도소득세 적용	* 사업양도시 높은 양도소득세 부과															
세제와 회계상의 차이	* 법인세 과세 - 2010년 2억 이하 10%, 2억 초과 22% “이익배당 시 15% 배당소득세 부과 * 대표자 급여 손금처리 및 퇴직급여 총당금 설정 * 대여금과 미수금도 대손충당금에 포함	* 종합소득세 과세 - 2010년 소득세율 : 6~35% * 사업과 관련된 채권만 대손충당금 설정 * 고정자산처분손실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															
	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적용 비교(2010년 기준)																
	<table><tr><th>과세기준</th><th>법인세(A)</th><th>소득세(B)</th><th>비고(B-A)</th></tr><tr><td>2,160만원</td><td>216만원</td><td>216만원</td><td>0</td></tr><tr><td>1억원</td><td>1,000만원</td><td>2,010만원</td><td>1,010만원</td></tr><tr><td>2억원</td><td>2,000만원</td><td>5,510만원</td><td>3,510만원</td></tr></table> “과세기준이 2,160만원 이하의 경우는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적음”		과세기준	법인세(A)	소득세(B)	비고(B-A)	2,160만원	216만원	216만원	0	1억원	1,000만원	2,010만원	1,010만원	2억원	2,000만원	5,510만원
과세기준	법인세(A)	소득세(B)	비고(B-A)														
2,160만원	216만원	216만원	0														
1억원	1,000만원	2,010만원	1,010만원														
2억원	2,000만원	5,510만원	3,510만원														
기타 장·단점	* 출자금 회수가 쉽고 대외 신용도가 높다 * 자산총액 100억 이상 외부감사 대상	* 외부감사 대상에 적용되지 않음 * 법인전환 시 신규법인보다 까다로움 * 감면대상에서 제외 될 가능성															